

제 호

주택관리업등록증

1. 상 호:

2. 영업소소재지:

3. 대표자 성 명:

4. 생 년 월 일:

5. 등 록 일: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 별 자 치 시 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